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 6. 8 선고 2022가단1704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윤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11.

판 결 선 고 2023. 6. 8.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6/69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2022. 3. 2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36/693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각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2. 6. 2. 접수 제192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21. 7. 15. C을 상대로 이 법원 2021차전1143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은 2021. 7. 28. ‘C은 원고에게 2,295,7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11. 10. 1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2021. 8. 19. 확정되었다.

나. C의 상속재산분할협의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2. 3.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 자녀들인 피고, C, F가 있었는데, 법정상속분은 E가 3/9이고, 피고, C, F는 각 2/9이다.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중 204/231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E, C, F는 2022. 3. 2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다. C의 무자력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적극재산으로 제1, 2 부동산의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았고,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시가 3,980,000원)를 망인과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자동차에는 G 주식회사가 채권가액 6,500,000원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었다.

2)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소극재산으로 피고에 대한 위 양수금채무 9,667,275원(=

미상환원금 2,295,772원 + 지연손해금 7,371,503원)을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으로 취득한 제1 부동산 중 136/693 지분(= 204/231 지분 × 2/9) 및 제2 부동산 중 2/9 지분을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2019. 5. 10.부터 2019. 12. 31.까지 7,260,00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15,660,00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16,680,000원,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19,485,000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등 소득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하고, 압류금지재산은 공동담보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이 인정되나, C의 위 소득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월 97만 원 ~ 162만 원 정도의 소득인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급료, 퇴직연금 등의 급여채권의 1/2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인 월 185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C의 위 급여 소득은 압류가 금지되어 적극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C의 위 급여 소득이 적극재산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C의 재정상태에 대해 알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선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찬

